

에이스여성종합상해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제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범위는 단순히 상해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질병으로 인한 손해, 개인배상책임, 비용손해까지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보험기간 (보험회사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 지급사유

구분	담보	내용
기본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일반상해 의료실비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상해입원일당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소득보상금	상해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경우

특약	질병입원의료비		책임개시일 이후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치료실비(발병일부터 365일 한도)
	여성성형수술비용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용)		자동차 사고로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여성특정질병 입원일당	여성안정질환	골다공증, 관절염 진단 확정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부인과 질환	유방 및 여성생식기 장애 진단 확정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운전자 비용손해	벌금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확정 판결시
		방어비용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기소된 경우
형사합의 지원금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사망케 하거나, 10대 종괴실 사고(무면허, 음주운전 제외)를 일으켜 피해자가 21일이상 치료시합의금 지급	

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1) 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2)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 3) 의료비 :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하며,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의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 입원일당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입원일당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5) 소득보상금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 6) 여성성형수술비용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여성성형수술비용으로 지급합니다.
- 7) 벌금 :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하며,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의 부담한 벌금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8) 운전자비용손해(벌금 제외) :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비용손해로 지급합니다.

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비, 기타상해담보의 경우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 피보험자의 사형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방사능 관련 오염 등.

② 질병입원의료비의 경우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다만, 치매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신경계의 질환으로서 유전적질환, 퇴행성질환, 간질, 편두통, 수면장애, 신경장애, 근육질환, 뇌성마비 등
- 치핵,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디스크)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및 산욕. 단,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손상, 중독 및 외인(상해)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등.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나. 보험료 산출 예시

가입 예) 보험기간 1년, 상해급수1급, 40세 여자, 월납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24시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3억원
	24시간 상해의료비	500만원
	소득보상금	1억원
	입원일당	3만원
선택계약	성형수술위로금	100만원
	질병입원의료비	1,000만원
	여성특정질병입원일당	5만원
	벌금	2,000만원
	형사합의지원금	300만원
	방어비용	200만원
보험료		37,820원

* 직무 및 성별,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수 있습니다.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